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5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 이 경우 구간의 산정은 위반행위 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다음 1)부터 4)까지에 따라 산정하되,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로 각각 부과한다.

1)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: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.

가)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한 경우: 1구간

나) 1년간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: 2구간

다)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: 3구간

2)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위반행위: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.

가)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: 1구간

나)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: 2구간

다) 1년간 21회 이상 위반한 경우: 3구간

3) 제3호아목에 따른 위반행위: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.

가)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00회 이하인 경우: 1구간

나)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0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: 2구간

다)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: 3구간

4) 제3호자목에 따른 위반행위: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.

가)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50회 이하인 경우: 1구간

나)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: 2구간

다)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

301회 이상인 경우: 3구간

라.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) 삭제 <2025. 2. 28.>

2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20의 범위

3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50의 범위

4)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,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: 100분의 75의 범위

마. 라목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.

바. 부과권자가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4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사. 바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의4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부과권자는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.

## 2. 차수별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조문  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4차 이상<br>위반 |
| 가.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77조 제7항제2호 | 25만원 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      |
| 나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3호 | 25만원 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      |
| 다.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50만원 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      |
| 라.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       | 50만원 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6항 제2호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마. 법 제83조제2항, 제88조제2항, 제97조제2항,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| 법 제277조 제6항 제3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바.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사.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 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아.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 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자. 법 제135조제2항(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| 6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차. 법 제136조제3항(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| 6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카.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 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타.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 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파. 법 제139조(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 제1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하.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1)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2)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3)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4)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 |               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5)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|           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거. 법 제141조제1호(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6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너.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더. 법 제141조제3호(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6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러. 법 제143조제1항(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머.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버.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서.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어.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7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저.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처.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커.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터.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퍼.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      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항제1호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허. 법 제160조제4항(법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5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고.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노.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도.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로. 법 제177조제2항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6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모.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보. 법 제180조제1항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7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소. 법 제180조제2항(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세관장의 보고지시·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77조 제7항제7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오. 법 제180조제3항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|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조. 법 제180조제4항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6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초. 법 제182조제1항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코.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토.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      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7항제4호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포. 법 제184조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호. 법 제185조제2항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구. 법 제186조제1항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누. 법 제187조제1항(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|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두. 법 제192조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루. 법 제193조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 또는 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7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| 무. 법 제194조(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부.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수.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우.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주.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추.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<br><br>1)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2)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쿠. 법 제20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투. 법 제200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| 1천만원  | 2천만원  | 3천만원  | 5천만원  |
| 푸. 법 제200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를 과실로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 400만원 |
| 후. 법 제20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그. 법 제20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느. 법 제20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드. 법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르.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| 법 제27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| 1천만원  | 2천만원  | 3천만원  | 5천만원  |
| 므. 과실로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법 제27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 400만원 |
| 브.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검사·조사 또는 보고지시에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7호                      | 25만원  | 50만원  | 100만원 | 100만원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스.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| 50만원       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
| 으. 법 제215조(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<br>1)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<br>2)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| 25만원<br>50만원         | 50만원<br>100만원         | 100만원<br>200만원         | 100만원<br>200만원         |
| 즈. 법 제216조제1항(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5호 | 50만원       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
| 츠. 법 제216조제2항(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<br>1)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<br>2)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<br>3)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| 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| 10만원<br>25만원<br>50만원 | 30만원<br>50만원<br>100만원 | 50만원<br>100만원<br>200만원 | 50만원<br>100만원<br>200만원 |
| 크. 법 제216조제3항(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| 50만원       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
| 트. 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 제1호 | 200만원                | 500만원                 | 800만원                  | 1천만원                   |
| 프.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| 50만원       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
| 호.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| 50만원       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
| 기.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        | 50만원       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6항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나.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 제5호                     | 50만원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|
| 다. 법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<br>1)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<br>2)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| 법 제277조 제5항 제1호                     | 50만원<br>100만원 | 100만원<br>200만원 | 300만원<br>400만원 | 500만원<br>500만원 |
| 리. 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5항 제2호                     | 50만원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| 300만원          | 500만원          |
| 미.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5항 제3호           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| 400만원          | 500만원          |
| 비.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 제4호                     | 25만원          | 50만원 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|
| 시. 법 제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 제6호                     | 25만원          | 50만원 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| 100만원          |
| 이. 법 제254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 제4호                     | 10만원          | 25만원           | 50만원           | 50만원           |
| 지. 법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| 1천만원          | 2천만원           | 3천만원           | 5천만원           |
| 치. 법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과실로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| 100만원         | 200만원          | 300만원          | 400만원          |
| 키.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·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3항 제3호                     | 1천만원          | 2천만원           | 3천만원           | 5천만원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티.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| 법 제277조 제3항제4호 | 1천만원  | 2천만원  | 3천만원  | 5천만원  |
| 피. 법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| 200만원 | 500만원 | 800만원 | 1천만원  |
| 히.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가.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경우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6호 | 50만원  | 1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나. 법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|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| 100만원 | 200만원 | 300만원 | 500만원 |
| 다.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1호 | 100만원 | 15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| 랴.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   |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| 1천만원  | 2천만원  | 3천만원  | 5천만원  |

### 3. 구간별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조문      | 과태료 금액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구간          | 2구간          | 3구간           |
| 가. 법 제13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<br>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<br>1)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<br>2)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(여객명부에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) |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| 25만원<br>10만원 | 50만원<br>25만원 | 100만원<br>50만원 |
| 나.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| 25만원         | 50만원         | 100만원         |
| 다.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<br>1)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10만원         | 30만원         | 50만원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|
| 2)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25만원 | 50만원  | 100만원 |
| 3)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50만원 | 100만원 | 200만원 |
| 라.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|      |       |       |
| 1)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0만원 | 30만원  | 50만원  |
| 2)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25만원 | 50만원  | 100만원 |
| 마. 법 제215조(법 제2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     |       |       |
| 1)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25만원 | 50만원  | 100만원 |
| 2)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50만원 | 100만원 | 200만원 |
| 바.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| 50만원 | 100만원 | 200만원 |
| 사.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| 10만원 | 30만원  | 50만원  |
| 아.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|      |       |       |
| 1)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(통관목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2)부터 4)까지에서 같다) |                | 5만원  | 10만원  | 20만원  |
| 2) 물품가격 기재 오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5만원  | 10만원  | 20만원  |
| 3) 물품수신인 성명 기재 오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5만원  | 10만원  | 20만원  |
| 4)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5만원  | 10만원  | 20만원  |
| 자.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 제7항제1호 | 10만원 | 20만원  | 30만원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<p>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법 제276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,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또는 다른 선박회사·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.</p> <p>1)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추가제출. 다만, 항공기로 수입한 화물은 입항편별 제출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.</p> <p>2)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</p> <p>3) 과적단속 결과 중량이 틀린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</p> <p>4) 1)부터 3)까지에 따른 오류 외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오류</p>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
#### 비고

자목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.

-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: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2배
-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: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

#### 4.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| 과태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가.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(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| 법 제277조 제1항 |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) 제31조의5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, 제9호 및 제10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4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)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5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) 제31조의5제1항제8호 또는 제11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3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미제출된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77조 제2항 | (1 + 지연기간/30) × [가목1)부터 3)까지에서 정한 금액] |

#### 비고

1.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1)부터 3)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. 이 경우 법 제27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1)부터 3)까지 중 가장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.
3.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우 지연기간은 3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, 그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#### 5.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조문           | 과태료 금액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277조의2 제5항 본문 |             |
| 가.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1)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금품 상당액의 2 배 |
| 2)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금품 상당액의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나.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<br/>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</p> <p>1) 2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</p> <p>2)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</p> <p>3)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</p> <p>다.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과태료 부과<br/>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법 제<br/>277조의2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<br/>되는 경우</p> |  | <p>3 배</p> <p>금품 상당액의<br/>2 배</p> <p>금품 상당액의<br/>3 배</p> <p>금품 상당액의<br/>4 배</p> <p>금품 상당액의<br/>5 배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